

수원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0나6709 판결 [공사대금 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3. 16.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1. 10. 선고 2020가소215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'C'라고 한다)로부터 D 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95,000,000원으로 정하여, E 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533,500,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(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'이 사건 공사계약'이라고 한다). 원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, 'C는 원고에게 2019. 12. 10.까지 1,500만 원을 지급하고, 위 지급기일에 위 금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C는 그 미지급 금전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.'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고 한다).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부도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. 피고는 C의 실제 소유주인바,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,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, C의 등기부상 임원은 사내이사 F 뿐이나,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그 법적 책임이 분리되는 것이다.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인 이상,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거나 실제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안좌진, 판사 이혜미